

# 2026년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는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12. 31.  
대전광역시장

## I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 지원액: 1인당 250만원
  -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접수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추진일정



\* 예산 사정상 지급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II 신청 방법

### 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부부 각자 신청

-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 ※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 2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 혼인신고일이 2025. 4. 3. ⇒ 신청가능일 2026. 4. 2.까지
- 혼인신고일이 2025. 1. 1.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  
⇒ 신청기한 종료(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http://www.daejeonyouthportal.kr)) / 메인화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클릭
- 신청대상: 조건에 충족하는 본인
  - 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
- 제출서류<sup>[참고 확인]</sup>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분 유효
  - 온라인 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 ※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 Ⅲ 지급시기 및 방법

#### 1 결혼장려금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 (하나은행) 별도 개설
  - ※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10자리)”를 입력하여야 전용계좌 개설 가능
  - ※ 계좌개설 링크는 모바일 접속만 가능 (PC 불가)
  - ※ 비대면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및 심사확인서(대전청년포털 출력)를 가지고 하나은행(대전 내)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  
(본인 방문 / 대리인 불가)
  - ※ 통장 관련 문의: 하나은행(☎ 1588-1111)

#### 2 전용계좌 정보 입력

- 전용계좌를 개설한 대상자는 신청홈페이지 내 계좌정보 입력
  - ※ 대전청년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신청정보 > 계좌(카드) 등록
  - ※ 전용계좌 정보 미입력 시 결혼장려금 지급 절차 진행 불가
- 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계좌번호 및 전용계좌 확인용) 첨부

#### 3 결혼장려금 지급

- 지급액: 1인당 250만원 / 일시지급
  - ※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
  - ※ 지급시기는 **계좌 정보 입력 후 최대 2개월 가량 소요**되며, 예산 사정 상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Ⅳ 부정수급 환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및 관련기관 통보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 \* 근거: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V 유의사항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기한 경과 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사업신청 후 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8037, 8432)에 직접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전용 계좌 입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로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8037, 843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FAQ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및 FAQ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서류 및 발급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자료만 인정하며,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① 참여 신청서		○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
③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 개명 등 공개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정부24(www.gov.kr)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 "상세"로 출력해야 함.	○ 동 행정복지센터 ○ 무인발급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www.efamily.scourt.go.kr)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등 처리기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공공재정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부정수급 처리기준
  - 동 법은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함
- (부정청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기준·규정·사규 등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부정이익 환수 처분)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부정청구의 경우 제재부과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 사용) 2배
- (제재부가금의 감면)
  - 면제: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2)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소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 면제·감경: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면제
- (가산금 및 체납처분)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